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 1/ 6 통권 1500호



### 2021년 시행

## 개정 조세법률 신규조문 대비표

### 목 차

▶ 2021년 개정세법 내용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 항목 엄선	p.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p.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p.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p.4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p.1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p.155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0호, 2020. 12. 29.)	p.165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p. 108

eAnSe.com 과 AnSe, Creates the Best Answer

taxpark.com 의 30분 내 Q&A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2021년 개정세법 중 기업영향 주요 내용

- ▷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소득법 §55)
- ▷ 기업의 세부담 경감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법인법 §13)
- ▷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법인법 §75조의4)
-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부가법 §42)
-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부가법 §60)
- ▷ 차등초과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도 부과함(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 ▷ 종부세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도 1주택으로 9억원 기본공제하면서, 장기보유와 노령자 세액공제 선택적용 가능함(종부세법 제10조의2 신설)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소득법 §81조의11)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조특법 §13조의4)
-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함(조특법 §24)
- ▷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조특법 §95조의2)
-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조특법 §126조의2)

#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안 제5조)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 2)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제4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신설

######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안 제75조의11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설립 및 해산 등(안 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안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분할을 법인의 합병·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 및 징수(안 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 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안 제24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 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마. 합병·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안 제45조제6항·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제7항 신설)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분할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

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안 제75조의7제1항)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안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 하향 조정(안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차.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제17항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 2)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20조의2제1항)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

현 행	개 정
<p>●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p> <p>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p> <p>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p> <p>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p>

현행	개정
<p>&lt;신설&gt;</p>	<p>는 신탁</p>
<p>② (생략)</p> <p>●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생략)</p> <p>2. 3. (생략)</p> <p>② (생략)</p> <p>●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생략)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생략)</p> <p>③ (생략)</p> <p>●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현행과 같음)</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신설>					
<p>③ (생략)</p> <p>●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u>가지급금(假支給金)</u> 등</p> <p>③ ~ ⑤ (생략)</p> <p>●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u>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u>)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p> <p>2. ~ 6. (생략)</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생략)</p> <p>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u>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손금산입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법정 기부금</td> <td>[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td> </tr> </tbody> </table>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p>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u>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u></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u>가지급금(假支給金)</u>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u>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u>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u>)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생략)</p> <p>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u>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u>금품의 가액</u>.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u>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u></p> <p>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p>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현행	개정
<p>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p> <p>2. 지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p>	<p>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p> <p>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li> <li>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li> <li>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li> <li>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li> <li>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li> <li>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li> <li>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li> <li>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li> <li>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li> </ol>

연	행	개	정
	<p>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li> <li>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li> <li>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li> <li>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li> <li>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li> <li>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li> <li>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li> <li>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li> <li>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li> <li>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li> <li>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li> <li>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li> <li>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li> </ol> <p>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p> <p>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p> </div>		

현행	개정
<p>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p> <p>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p> <p>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p> <p>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p> <p>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p> <p>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p> <p>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p> <p>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p>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p>	<p>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p> <hr/> <p>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p> </div>



현행	개정
<p>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u>울산과학기술원법</u>」에 따른 <u>울산과학기술원</u></p> <p>아. 「<u>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u>, 「<u>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u>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p> <p>자. 「<u>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u>한국학교</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p> <p>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u>국립대학병원 설치법</u>」에 따른 <u>국립대학병원</u></p> <p>나. 「<u>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u>」에 따른 <u>국립대학치과병원</u></p> <p>다. 「<u>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u>」에 따른 <u>서울대학교병원</u></p> <p>라. 「<u>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u>」에 따른 <u>서울대학교치과병원</u></p> <p>마. 「<u>사립학교법</u>」에 따른 <u>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u></p> <p>바. 「<u>암관리법</u>」에 따른 <u>국립암센터</u></p> <p>사.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지방의료원</u></p> <p>아. 「<u>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립중앙의료원</u></p> <p>자. 「<u>대한적십자사 조직법</u>」에 따른 <u>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u></p> <p>차.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u>」에 따른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u></p> <p>카. 「<u>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u>」 제13조의2에 따른 <u>한국원자력의학원</u></p> <p>타. 「<u>국민건강보험법</u>」에 따른 <u>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u></p> <p>파.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제43조제1항제1호</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에 따른 의료기관</p> <p>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p> <p>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 손금에 산입한다.</p> <p>●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1. · 2. (생략)</p> <p>② ~ ⑩ (생략)</p> <p>●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 손금에 산입한다.</p> <p>●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p>

연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③ (생략)</p> <p>●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p>



현행	개정
<p>●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math> <p>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p> <p>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p> <p>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p> </div> <p>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p> <p>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math> <p>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p> <p>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p> <p>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p> </div>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p>

현행	개정
<p>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u>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u>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⑤ (생략)</p> <p>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u>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⑦ (생략)</p> <p>● 제57조의2 <b>【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b>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 제58조 <b>【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b> ① (생략)</p> <p>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u>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u></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63조 <b>【중간예납 의무】</b> ①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할 수 있다.</p> <p>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u>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u>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u>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p>⑦ (현행과 같음)</p> <p>● 제57조의2 <b>【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b>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58조 <b>【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b> ① (현행과 같음)</p> <p>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u>법인세</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63조 <b>【중간예납 의무】</b>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p> <p>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나·다. (생략)</p> <p>③ ~ ⑤ (생략)</p> <p>●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 ③ (생략)</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⑤·⑥ (생략)</p> <p>●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p>	<p>●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p> <p>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나·다.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p> <p>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p>

현 행	개 정
<p><b>불성실 가산세】</b> ① (생략)</p> <p>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p> <p>1. 2.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u>1천분의 5</u>(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u>1만분의 25</u>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u>1천분의 5</u>.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1. 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b>불성실 가산세】</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u>1만분의 25</u>(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u>1십만분의 125</u>로 한다). &lt;단서 삭제&gt;</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u>1만분의 25</u>. &lt;단서 삭제&gt;</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1. 2. (생략) ②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절 통칙</u></p> <p>● <b>제75조의10【적용 관계】</b>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 <b>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의 적용】</b>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b>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예산 등】</b>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b>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b>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p>	

현행	개정
<p>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p> <p>● 제75조의14【<b>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b>】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p> <p>● 제75조의15【<b>신탁의 합병 및 분할</b>】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p> <p>● 제75조의16【<b>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b>】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p> <p>● 제75조의17【<b>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b>】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p> <p>● 제75조의18【<b>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b>】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p>	<p>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현행	개정
<p>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p>	<p>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p>
<p>●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생략)</p> <p>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u>발행주식총수</u>(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p> <p>⑥ (생략)</p>	<p>●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u>발행주식총수</u>(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생략)</p> <p>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p> <p>2.·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생략)</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p> <p>⑧ (생략)</p>	<p>●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를 준용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90조 【<b>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b>】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92조 【<b>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b>】 ① (생략) ② (생략)</p> <p>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p> <p>가·나. (생략) ③ ~ ⑦ (생략)</p>	<p>● 제90조 【<b>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b>】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92조 【<b>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b>】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p> <p>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p> <p>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p> <p>가·나.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p> <p>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p> <p>3. ~ 7. (생략)</p> <p>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 그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lt;후단 신설&gt;  가. ~ 다. (생략)</p> <p>9. (생략)</p> <p>10. (생략) 가. ~ 차. (생략) <u>&lt;신설&gt;</u></p>	<p>●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2호의2 또는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p> <p>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p> <p>3. ~ 7. (현행과 같음)</p> <p>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 그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p>

현행	개정
<p>칸. 가목부터 <u>차목</u>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93조의2【<u>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u>】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u>제한세율</u>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96조【<u>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u>】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나. (생략) 2.·3. (생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생략)</p> <p>● 제97조【<u>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u>】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u>부동산등양도소득</u>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p>	<p><u>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u>)</p> <p>단. 가목부터 <u>카목</u>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93조의2【<u>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u>】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u>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96조【<u>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u>】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현행과 같음)</p> <p>● 제97조【<u>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u>】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u>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u>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u>부동산등양도소득</u>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p>

현행	개정
<p>1. ~ 7. (생략) ② ~ ⑤ (생략)</p> <p>●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생략)</p> <p>1. ~ 6. (생략)</p> <p>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p> <p>② ~ ⑫ (생략)</p> <p>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⑭ ~ ⑮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p> <p>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15</p> <p>나. 제93조제10호가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p> <p>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금액의 100분의 10</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p> <p>② ~ ⑫ (현행과 같음)</p> <p>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⑭ ~ ⑮ (현행과 같음)</p> <p>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98조의6 【<u>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u>】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키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8조의6 【<u>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u>】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98조의7 【<u>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u>】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p> <p>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p> <p>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p>	<p>는 경우 :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 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p>
<p>● 제109조 【<u>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u>】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p>	<p>● 제109조 【<u>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u>】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p>



현행	개정
<p>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p> <p>3.·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p> <p>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p> <p>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p> <p>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p> <p>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p> <p>5. 신수탁자 선임일</p> <p>6. 신수탁자 선임사유</p> <p>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p> <p>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p> <p>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p> <p>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p> <p>5. 신탁사무 승계일</p> <p>6. 전수탁자 종료사유</p> <p>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p> <p>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p> <p>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p> <p>4. 대표수탁자 변경일</p> <p>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p>
<p>● 제111조【사업자등록】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③·④ (생략)</p>	<p>● 제111조【사업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lt;단서 신설&gt;</p> <p>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lt;단서 신설&gt;</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단서 신설&gt;</p> <p>● 제113조【구분경리】① ~ ⑤ (생략) &lt;신설&gt;</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p>	<p>●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113조【구분경리】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
<p><b>제출 의무</b> (생략)</p> <p>● <b>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b> (생략)</p> <p>● <b>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b></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부칙&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p>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93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제12조 【이자·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p> <p>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15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 【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조 【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8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9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0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택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택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택 관련 과세체계 정비

- 1)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신택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택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2)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납부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택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택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3)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신설)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택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택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
- 4) 신택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안 제8조제6항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택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5) 신택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안 제58조의2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택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택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

- 1) 영수증 발급 대상 조정(안 제36조제1항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
-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다는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현행 제65조 삭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안 제66조 및 제67조제3항)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5)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현행 제68조제2항·제3항 삭제 및 안 제68조의2 신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안 제69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다는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현	행	개	정
<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p> <p>5. ~ 9. (생략)</p>	<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u>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u>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p> <p>5.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3조【납세의무자】(생략)</p> <p>1. 사업자</p> <p>2. 재화를 수입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3조【납세의무자】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li> <li>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p>	<p>●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자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p>

현행	개정
<p>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p> <p>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p>	<p>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p> <p>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p> <p>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p> <p>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조 【사업자등록】 ① ~ ⑤ (생략)  <u>&lt;신설&gt;</u></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⑨ (생략)</p> <p>⑩ (생략)</p> <p>1. (생략)</p>	<p>● 제8조 【사업자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⑩ (현행 제9항과 같음)</p> <p>⑪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p> <p>3. (생략)</p> <p>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p>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조【재과 공급의 특례】① ~ ⑦ (생략)</p> <p>⑧ (생략)</p> <p>⑨·⑩ (생략)</p> <p>●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생략)</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생략)</p> <p>● 제36조【영수증 등】① (생략)</p> <p>1. 간이과세자</p> <p>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p>	<p>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p> <p>3. (현행과 같음)</p> <p>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p> <p>⑪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조【재과 공급의 특례】① ~ ⑦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⑨·⑩ (현행과 같음)</p> <p>●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36조【영수증 등】① (생략)</p> <p>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p> <p>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p> <p>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p>

현행	개정
<p>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⑥ (생략)</p>	<p>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 제36조의2 <b>【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b>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 <b>【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b> ① (생략) 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u>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u> 나. <u>간이과세자</u> 2. (생략)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u>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u> 나. <u>가목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u>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일반과세자</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2.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p>● 제46조 <b>【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b> ① (현행과 같음) 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u>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u> 나. <u>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u> 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u>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자</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3. <u>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u></p> </p>

현행	개정
<p>④·⑤ (생략)</p> <p>● 제50조【<u>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u>】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 제52조【<u>대리납부</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1.·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52조의2【<u>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u>】 &lt;신설&gt;</p> <p>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p>	<p><u>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50조【<u>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u>】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 제52조【<u>대리납부</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52조의2【<u>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u>】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거</p> <p>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p> <p>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는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p> <p>●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p> <p>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p> <p>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는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p> <p>●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p>

현행	개정
<p>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p> <p>1. ~ 5. (생략)</p> <p>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④ ~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p> <p>●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p> <p>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p>

현행	개정
<p>② ~ ⑥ (생략)</p> <p>●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 아니 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③ (생략)</p> <p>●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2. (생략) 3. (생략) ④ (생략)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생략)</p> <p>● 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익제매입세액 공제】 (생략)</p> <p>●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p>	<p>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 아니 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lt;삭 제&gt;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현행과 같음)</p> <p>        &lt;삭 제&gt;</p> <p>●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p>

현행	개정
<p>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p> <p>●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p> <p>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정수】 ①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생략)</p>	<p>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p> <p>●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p> <p>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정수】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p>	

현행	개정
<p>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p> <p>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p> <p>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p> <p>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결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p> <p>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p>	<p>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p> <p>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p> <p>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 이 조 제3항</p> <p>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p> <p>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p> <p>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p> <p>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④ (생략)</p>	<p>●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lt;부칙&gt;</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p>	

제67조제2항·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택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제6조 **【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

- 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 ⑤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 한다.
-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 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의4제1항)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
-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제8항 및 제16조제1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 신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
- 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폐지(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소·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4)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
  -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1) 법인 전환을 위한 주택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
  - 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현행 제33조의2 삭제)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3)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4)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축산업·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안 제77조의3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への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면 개편(안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

-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안 제96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97조의3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

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 (안 제99조의4제1항)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함.

- 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99조의10)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차.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1)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안 제100조의3제5항제2호니목)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안 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거주자·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

- 3) 세무서장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0조의6제11항 신설)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안 제100조의8제3항)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기업의 소득 중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

-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1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추가함.
  - 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설(안 제111조의5 신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
  - 3)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안 제111조의6 신설)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함.
  - 4)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안 제115조제1항)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
- 하. 그 밖의 조세특례
- 1)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  
납세자가 전자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부과세 방식의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함.
  - 2)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안 제121조의14제1항 신설)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126조의2제10항)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 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 5)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

현행	개정
<p>●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생략)</p> <p>●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생략) ② ~ ⑫ (생략)</p>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감면 업종 가. ~ 루.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p> <p>2. 감면 비율 &lt;단서 신설&gt;</p> <p>가. ~ 바. (생략)</p> <p>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p>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감면 업종 가. ~ 루. (현행과 같음)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 비율은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p>

현행	개정
<p>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② (생략)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⑦ (생략)</p> <p>●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p> <p>●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익 등에 대한 비과세】① (생략)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p>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익 등에 대한 비과세】①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p>

현행	개정
<p>"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자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자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③ (생략)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p>	<p>"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현행과 같음)</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자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자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 제13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p>	<p>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p>

현행	개정
<p>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p>	<p>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p> <p>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p> <p>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p> <p>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p>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③ 삭제</p> <p>④ ~ ⑥ (생략)</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 이 경우</p>	<p>●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③ 삭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 이 경우 201</p>

현행	개정
<p>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p> <p>1.·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 ② ~ ④ (생략)</p>	<p>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 ② ~ ④ (생략)</p>
<p>&lt;신설&gt;</p>	
<p>●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공제대상 자산</p> <p>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p>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p> <p>2. 공제금액</p> <p>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나.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p>	<p>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25조 ~ 제25조의5</p> <p>● 제25조의6 <b>【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p> <p>● 제25조의7 <b>【조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b> (생략)</p> <p>● 제26조 <b>【고용장출투자세액공제】</b> ① (생략)</p> <p>1. 기본공제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나. (생략) 2. (생략) ② ~ 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25조의6 <b>【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26조 <b>【고용장출투자세액공제】</b> ① (현행과 같음)</p> <p>1. 기본공제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u>중견기업</u>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26조의2 <b>【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b>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p>	<p>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p> <p>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27조 【<b>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b>】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8조의2 【<b>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b>】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 제28조의2 【<b>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b>】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28조의3 【<b>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b>】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생략)                  ②·③ (생략)</p>	<p>● 제28조의3 【<b>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b>】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생략)                  ②·③ (생략)</p>
<p>● 제29조의2 【<b>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생략)</p>	<p>● 제29조의2 【<b>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3 【<b>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b>】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p>	<p>● 제29조의3 【<b>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b>】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p>

현행	개정
<p>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2.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p>	<p>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p>

현	행	개	정
<p>세표준신고를 ……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⑥ ~ ⑧ (생략)</p> <p>● 제29조의5【정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③ (생략)</p> <p>●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 1,200만원)]을 곱한 금액</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과세표준신고를 ……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5【정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 1,200만원)]을 곱한 금액</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li>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li> <li>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li> </ol>
<p>●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② ~ ⑤ (생략)</p>	<p>●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p>	<p>●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p>

현행	개정
<p><b>세특례</b>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p> <p><b>●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b> (생략)</p> <p><b>●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b> ① 삭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p> <p><b>●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b> ①·② 삭제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p> <p><b>●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b> ① ~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p> <p><b>●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b>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p>	<p><b>세특례</b>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b>●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b> ① 삭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p> <p><b>●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b> ①·② 삭제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p> <p><b>●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b>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현행과 같음)</p> <p><b>●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b>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p>

현행	개정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p>	<p>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에 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p> <p>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p> <p>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p> <p>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이전할 것</p> <p>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p>

현행	개정
<p>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p>	<p>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li> </ol>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
<p>● 제63조의2【<b>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b>】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p>	<p>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p> <p>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 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3조의2【<b>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b>】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p>

현행	개정
<p>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p> <p>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p> <p>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p> <p>나. 삭제</p>	<p>(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p> <p>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p> <p>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p> <p>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p> <p>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p> <p>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p> <p>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현행	개정
<p>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p> <p>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p> <p>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p> <p>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p> <p>1. 삭제</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p> <p>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p>

현행	개정
<p>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li> <li>4. 삭제</li> <li>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li> <li>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p>	<p>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p> <p>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략)</p>	<p>●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p>	<p>●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p>	<p>●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p>



현행	개정
<p>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 ~ ⑥ (생략)</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생략)</p> <p>1. ~ 7. (생략)</p> <p>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p> <p>9.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75조【기부장려금】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⑥ (생략)</p> <p>⑦ (생략)</p> <p>1. (생략)</p> <p>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⑧ ~ ⑪ (생략)</p> <p>●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 ④ (생략)</p>	<p>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5조【기부장려금】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⑧ ~ ⑪ (현행과 같음)</p> <p>●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⑥ ~ ⑨ (생략)</p>	<p>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 ⑤ (생략)</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⑦·⑧ (생략)</p>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p>	<p>●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p>

현행	개정
<p>한다.</p> <p>② (생략)</p> <p>●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① ~ ⑤ (생략)</p> <p>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⑦ (생략)</p> <p>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⑨ ~ ⑪ (생략)</p> <p>●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p>	<p>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⑨ ~ ⑪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lt;후단 삭제&gt;</p> <p>⑤ (생략)</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p>

현행	개정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② 삭제</p> <p>③ (생략)</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생략)</p> <p>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한도액}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30</math> <p>A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p> <p>B :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p> <p>C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p> </div> <p>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현행	개정
	<p>한도액 = (A-B) × 100분의 30                      A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B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p>
	<p>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p>한도액 = [A-(B+C)] × 100분의 30                      A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C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p>
<p>⑭ (생략)</p> <p>●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p> <p>●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생략)                      ② ~ ⑥ 삭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p>	<p>⑭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p> <p>●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생략)                      ② ~ ⑥ 삭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p>

현행	개정
<p>.....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생략)</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① ~ ⑤ (생략)</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p>	<p>.....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p>

현행	개정
<p>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략)</p> <p>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u>추징하여야 한다</u>.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생략)</p> <p>●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p> <p>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을 준용한다.</p> <p>●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⑤ (생략)</p> <p>●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p> <p>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p> <p>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 방법</u>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p> <p>⑤ <u>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u></p> <p>⑥ (생략)</p> <p>⑦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p> </div> <p>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 방법</u>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p> <p>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u>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p>

현행	개정
<p>를 받은 날에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u>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들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가입자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가입절차</u>,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교세】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생략)</p> <p>●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u>계약</u>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들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계좌보유자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u></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u>가입·연장절차</u>,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교세】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p>

현행	개정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⑤ (생략)</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④ (생략)</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p>	<p>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 100분의 7</p>



현행	개정
<p>●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p> <p>3. (생략)</p> <p>⑤ ~ ⑦ (생략)</p>	<p>●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p> <p>3.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p>	<p>●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p>

현행	개정
<p>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2. (생략)</p> <p>●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① (생략)</p> <p>1. (생략)</p> <p>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p>	<p>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p>

현행	개정
<p>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u>2019년 7월 25일</u>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u>체납처분을</u>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u>체납처분을</u> 하여야 한다.</p> <p>⑧ (생략)</p> <p>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u>2019년 7월 25일</u>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u>2019년 7월 25일부터</u>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2019년 7월 25일</u>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li> <li><u>2019년 7월 25일</u> 현재 <u>체납처분이</u>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li> <li><u>2019년 7월 25일</u> 현재 총재산가액이 <u>체납처분비</u>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li> </ol> <p>4. (생략)</p> <p>⑩ (생략)</p> <p>●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 ④ (생략)</p> <p>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li> </ol>	<p>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u>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u>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u>강제징수를</u>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2019년 12월 31일</u>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u>2019년 7월 25일</u></li> <li><u>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u>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u>2020년 7월 25일</u></li> </ol> <p>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u>강제징수를</u> 하여야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u>기준일</u>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u>기준일부터</u>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기준일</u>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li> <li><u>기준일</u> 현재 <u>강제징수가</u>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li> <li><u>기준일</u> 현재 총재산가액이 <u>강제징수비</u>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li> </ol> <p>4. (현행과 같음)</p> <p>⑩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li> </ol>



현행	개정
<p>2. <u>홀벌이 가구</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생략)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u>70세 이상</u>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2) (생략)  <u>&lt;신설&gt;</u></p> <p>3. (생략)  ⑥·⑦ (생략)</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조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u>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④·⑤ (생략)</p> <p>●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u>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u>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2. <u>홀벌이 가구</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현행과 같음)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u>직계존속</u>(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2) (현행과 같음)  3) <u>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p> <p>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u>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u>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u>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⑥ ~ 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⑪ (생략)</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①·② (생략)</p> <p>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p> <p>⑤ ~ ⑧ (생략)</p> <p>●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등 업자에 대한 원천징수】① ~ ⑥ (생략)</p> <p>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p> <p>⑧ (생략)</p> <p>● 제100조의25【가산세】① (생략)</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⑪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등 업자에 대한 원천징수】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25【가산세】① (생략)</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u>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u> × 금융기관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2. (생략)</p> <p>● 제100조의30【<u>자녀장려금의 신청 등</u>】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u>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u>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00조의32【<u>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u>】① (생략)</p> <p>1. (생략)</p> <p>가.·나. (생략)</p> <p>다. 「<u>법인세법</u>」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p> <p>2. (생략)</p> <p>② (생략)</p> <p>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p> <p>가. ~ 다. (생략)</p> <p>2. (생략)</p> <p>③ ~ ⑥ (생략)</p> <p>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u>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u>로 이월하여 <u>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u></p> <p>⑧ ~ ⑩ (생략)</p> <p>● 제104조의7【<u>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u></p>	<p>② (현행과 같음)</p> <p>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u>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u> × 금융기관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2.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30【<u>자녀장려금의 신청 등</u>】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u>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32【<u>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u>】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u>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u></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7【<u>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u></p>

현행	개정
<p><b>례】</b> ① ~ ③ (생략)</p> <p>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p> <p>⑤ (생략)</p> <p>●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례】</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p> <p>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p> <p>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현행	개정
<p>●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생략)</p>	<p>&lt;삭제&gt;</p>
<p>●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 3. (생략)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②·③ (생략)</p>	<p>●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① (생략)</p> <p>1. (생략)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생략) 1. (생략)</p>	<p>●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① (생략)</p> <p>1. (생략)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lt;단서 삭제&gt;</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 이차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p> <p>⑥ (생략)</p> <p>●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u></p> <p>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 이차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p> <p>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p> <p>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p>	<p>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p> <p>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p> <p>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p>	<p>●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p>



현행	개정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p> <p>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 다. (생략)</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u>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 나. (생략)</p> <p>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u>과세기간</u>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p> <p>라. · 마. (생략)</p> <p>3. (생략)</p> <p>⑥ ~ ⑨ (생략)</p> <p>●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 7. (생략)</p>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p> <p>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p> <p>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u>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u>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u>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p> <p>라. · 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신 설>	
<p>8.·9. (생 략)</p> <p>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u>연료전지자동차</u>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생 략)</p> <p>9의3. ~ 12.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p>1. ~ 4. (생 략)</p> <p>5. ~ 8. 삭제</p> <p>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u>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u>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10. ~ 18. 삭제</p> <p>19.·20. (생 략)</p> <p>③·④ 삭제</p> <p>⑤ (생 략)</p> <p>● 제106조의2 【<u>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어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p> <p>1.·2. (생 략)</p> <p>② ~ ② (생 략)</p> <p>● 제107조의2 【<u>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u></p>	<p>7의2.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u></p> <p>8.·9. (현행과 같음)</p> <p>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u>수소전기자동차</u>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현행과 같음)</p> <p>9의3. ~ 12.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8. 삭제</p> <p>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u>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u>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10. ~ 18. 삭제</p> <p>19.·20. (현행과 같음)</p> <p>③·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의2 【<u>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어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②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의2 【<u>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u></p>



현행	개정
<p><b>세의 특례】</b>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 <b>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 (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 <b>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b>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 <b>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b> ① ~ ⑤ (생략)</p> <p>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⑦ ~ ⑨ (생략)</p> <p>● <b>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1.·2. (생략) ② (생략)</p>	<p><b>세의 특례】</b>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b>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 (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b>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b>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b>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b>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 <b>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신설>	
<p>●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p> <p>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이</p>	<p>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p> <p>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p> <p>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④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11조의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p>
<p>● 제115조 【주세의 면제】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p>	<p>● 제115조 【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p> <p>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p>

현행	개정
<p>②·③ (생략)</p> <p>●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생략)</p> <p>1. ~ 2의4. (생략)</p> <p>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나. (생략)</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p> <p>4. ~ 24. (생략)</p> <p>② (생략)</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 : 2020년 12월 31일</p> <p>2. (생략)</p> <p>③ 삭제</p> <p>④ (생략)</p> <p>● 제118조【관세의 경감】① (생략)</p> <p>1.·2. 삭제</p> <p>3.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p>	<p>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p> <p>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현행과 같음)</p> <p>1. ~ 2의4. (현행과 같음)</p> <p>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나. (현행과 같음)</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p> <p>4. ~ 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 2022년 12월 31일</p> <p>2.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관세의 경감】① (현행과 같음)</p> <p>1.·2. 삭제</p> <p>3.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 제</p>

현행	개정
<p>조세1호 및 ……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4. ~ 13. 삭제 14. ~ 2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 ⑩ (생략) ⑪ (생략) 1.·2. (생략)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⑫ ~ ⑱ (생략)</p> <p>●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lt;신설&gt;</p> <p>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p> <p>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p> <p>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4. ~ 13. 삭제 14. ~ 2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⑫ ~ ⑱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p> <p>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p> <p>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p> <p>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생략)</p> <p>1.·2. (생략)</p> <p>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p> <p>5. ~ 7. (생략) ② ~ ⑩ (생략)</p>	<p>●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p> <p>5. ~ 7.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② (생략)</p>	<p>●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⑥ (생략)</p> <p>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현행	개정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p> <p>● 제122조의3【<b>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b>】①·② (생략)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생략)</p> <p>● 제126조의2【<b>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b>】① ~ ④ (생략)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생략) ⑩ (생략)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u>연간 300만원</u>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연간 300만원</u>)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 <u>연간 200만원</u></p> <p>● 제126조의3【<b>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b>】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u>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u></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현행과 같음)</p> <p>● 제122조의3【<b>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b>】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u>4천500만원</u>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26조의2【<b>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b>】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u>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u>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u>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u>)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 <u>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u></p> <p>● 제126조의3【<b>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b>】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u>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u></p>

현행	개정
<p>으로 정하는 금액을 .....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 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p> <p>1. ~ 3. (생략)</p> <p>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p>	<p>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p>

현행	개정
<p>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⑥ ~ ⑩ (생략)</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p> <p>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p> <p>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p>

현행	개정
<p>●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단서 신설&gt;</p> <p>●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 제60조 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및 제63조</li> </ol>	<p>(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 제60조 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li> </ol>

현행	개정
<p>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p> <p>② (생략)</p> <p>1. 삭제</p> <p>2. (생략)</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①·② (생략)</p> <p>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④·⑤ (생략)</p>	<p>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44조【<b>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b>】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p> <p>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7년</p> <p>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10년</p> <p>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 (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년</p> <p>3. 그 밖의 경우 : 5년</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 제146조【<b>감면세액의 추징</b>】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 ……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 제144조【<b>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b>】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146조【<b>감면세액의 추징</b>】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 ……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147조 【<u>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u>】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p>	<p>● 제146조의2 【<u>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 세액의 추징</u>】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47조 【<u>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u>】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p>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를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보유·취득·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중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중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중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기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4일 (목)	12월 28일 (월)	12월 29일 (화)	12월 30일 (수)
미 달 러 (USD)	1108.90	1103.70	1098.20	1093.20
일 본 엔 (JPY)	1070.73	1065.50	1058.40	1056.18
영 국 파 운 드 (GBP)	1498.18	1496.23	1477.46	1475.87
캐 나 다 달 러 (CAD)	863.06	859.31	854.90	852.96
홍 콩 달 러 (HKD)	143.03	142.35	141.62	140.98
위 안 화 (CNH)	169.57	169.25	168.22	167.56
유 로 화 (EUR)	1351.53	1345.91	1341.56	1340.10
호 주 달 러 (AUD)	839.94	838.98	832.60	832.09
싱 가 폴 달 러 (SGD)	832.95	830.04	825.40	823.66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2.89	271.81	271.14	269.89

#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1)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안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05조제1항제1호)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안 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저목 신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 다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45조제3항)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 포함 근거 마련(안 제52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안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써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중 세액공제방법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함.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안 제81조의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

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차.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안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 함.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간의 상호 조문 이관

1)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를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안 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를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당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면제(안 제160조의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을 면제함.

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64조의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

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안 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p>●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②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⑦ (현행과 같음)</p>
<신 설>	
<p>● 제2조의3 【신택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택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택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p>	<p>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택 또는 위탁자가 신택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택의 경우에는 그 신택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p>
<p>●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종합소득</p> <p>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p>	<p>●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종합소득</p> <p>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p>



현행	개정
<p>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략)</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③ (생략)</p> <p>●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어.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4. (생략)</p> <p>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아.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략)</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2의2. 금융투자소득</p> <p>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p> <p>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어. (현행과 같음)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p> <p>4. (현행과 같음)</p> <p>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p>

현 행	개 정
<p>●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 7. (생략)</p> <p>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p> <p>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p> <p>나. (생략)</p> <p>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p> <p>라·마. (생략)</p> <p>9.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16조 【이자소득】 ① (생략)</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3. ~ 11. (생략)</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p> <p>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p> <p>②·③ (생략)</p> <p>●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합한다) 등이 받는 수당</p> <p>●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p> <p>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p> <p>라·마.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6조 【이자소득】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p> <p>3.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p> <p>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2. (생략)</p> <p>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p>

현행	개정
<p>3.·4. (생략)</p> <p>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u>이익 &lt;단서 신설&gt;</u></p> <p>5의2. (생략)</p> <p>6. (생략)</p> <p>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p> <p>8. (생략)</p> <p>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p> <p>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p> <p>② (생략)</p> <p>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p>1. ~ 24. (생략)</p> <p>25. (생략)</p> <p>2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3.·4. (현행과 같음)</p> <p>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u>이익. 다만, 제87조의6 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 <p>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p> <p>8. (현행과 같음)</p> <p>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p> <p>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거래 또는 행위로로부터의 이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p>1. ~ 2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삭제&gt;</p> <p>26. (현행과 같음)</p> <p>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p> <p>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p>

현행	개정
<p>② ~ ④ (생략)</p> <p>●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략)</p> <p>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p> <p>2. ~ 15.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략)</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p> <p>A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p> <p>B :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p> </div> <p>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p>	<p>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 소득으로 한다.</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p> <p>2. ~ 1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p> <p>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p> <p>A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p> <p>B :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p> </div>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경비 산입한도액 =</p>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10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20\text{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p>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math>[A - (B + C)] \times 100\text{분의 } 30</math></p>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p>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 (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li> <li>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필요경비 산입한도액 =</p> <math display="block">\{A - (B + C)\} \times 100\text{분의 } 10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20\text{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math>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li> </ol> </li> </ol>

현행	개정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p>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p>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p> <p>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5조【<b>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b>】①·②(생략)</p> <p>③(생략)</p> <p>1.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기본한도 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math> <p>A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p> <p>B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p> </div> <p>2. (생략)</p> <p>④·⑤(생략)</p>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p>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p>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5조【<b>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b>】①·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1.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기본한도 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math> <p>A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p> <p>B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p> </div> <p>2. (현행과 같음)</p> <p>④·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생략)</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p>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② (생략)</p> <p>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p> <p>②·③ (생략)</p>	<p>●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③ (생략)</p> <p>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p>

현행	개정																																		
<p>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생략)</p> <p>⑥ ~ ⑪ (생략)</p> <p>● 제55조 【세율】 ①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 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p>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p>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⑥ ~ ⑪ (현행과 같음)</p> <p>● 제55조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 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p>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현행	개정
<p>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math> <p>A :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p> </div> <p>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p> <p>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조세조</p>	<p>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math> <p>A :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p> </div> <p>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조세조</p>

현행	개정
<p>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u>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p> <p>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u>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p> <p>⑤ (생략)</p> <p>● 제58조 【재애손실세액공제】 ① (생략)</p> <p>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u>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u></p> <p>2. (생략)</p> <p>② ~ ⑧ (생략)</p> <p>●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u>법정기부금</u></p> <p>2. <u>지정기부금</u>.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u>지급한</u> 금액 중 적은 금액]</p> <p>나. (생략)</p> <p>⑤ ~ ⑧ (생략)</p> <p>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u>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정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u></p>	<p>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u>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p> <p>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u>세액공제</u>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58조 【재애손실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p> <p>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u>소득세액</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제34조제2항제1호의 <u>기부금</u></p> <p>2. 제34조제3항제1호의 <u>기부금</u>.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u>기부한</u> 금액 중 적은 금액]</p> <p>나. (현행과 같음)</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p> <p>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u>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u> : 연 13만원</p> <p>2.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u></p>

현행	개정
<p>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p>	<p>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 연 7만원</p>
<p>⑩·⑪ (생략)</p>	<p>⑩·⑪ (현행과 같음)</p>
<p>●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① (생략)</p>	<p>●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p>	<p>●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② (생략)</p>	<p>●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p>	<p>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p>
<p>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p>	<p>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p>

현행	개정
<p>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⑤ (생략)</p> <p>●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생략) <u>&lt;신설&gt;</u></p> <p>●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u>납세고지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u>납세고지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⑪ (생략)</p> <p>●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자의 예정신고와 납부】① ~ ④ (생략)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u>환산취득가액</u>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생략)</p> <p>●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⑥ (생략)</p>	<p>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u>납부고지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u>납부</u>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u>납부고지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⑪ (현행과 같음)</p> <p>●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자의 예정신고와 납부】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u>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u>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p> <p>●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u>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u>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76조 【<b>확정신고납부</b>】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u>확정신고납부</u>"라 한다. ③ (생략)</p> <p>● 제81조의7 【<b>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b>】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u>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u>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 제81조의11 【<b>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b>】 ① (생략)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략)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u>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u>.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생략)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u>1천분의 5</u>.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p>	<p>● 제76조 【<b>확정신고납부</b>】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u>확정신고납부</u>"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7 【<b>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b>】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u>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u>을 포함한다. 이하 "<u>기부금영수증</u>"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1 【<b>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b>】 ① (현행과 같음)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u>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u> &lt;단서 삭제&gt;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 사실과 다른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u>1만분의 25</u> &lt;단서 삭제&gt;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81조의13【<b>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b>】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 제84조【<b>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b>】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3. (생략)</p> <p>● 제85조【<b>징수와 환급</b>】① ~ ③ (생략)</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 제85조의2【<b>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b>】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p> <p>② ~ ⑥ (생략)</p>	<p>● 제81조의13【<b>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b>】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84조【<b>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b>】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 제85조【<b>징수와 환급</b>】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2【<b>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b>】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p> <p>제1절 정의</p> <p>● 제87조의2【<b>정의</b>】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p> <p>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p> <p>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p>	

현행	개정
<p>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에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p>	<p>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p>
<p>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p>	
<p>● 제87조의3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p>
<p>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p>	
<p>● 제87조의4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p> <p>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p> <p>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p>	<p>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p> <p>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p> <p>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p> <p>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5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p> <p>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제1호에 따른 금융투</p>	<p>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p> <p>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p> <p>●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li> <li>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환매등</li> </ol> <p>●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조속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p> <p>●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p> <p>●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p> <p>●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p> <p>●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p>	<p>"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li> <li>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 한다.</p> <p>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p> <p>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 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p>

현행	개정
<p>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p>	<p>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p>
<p>●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li> <li>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ol> <p>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p>	<p>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p>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li> <li>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p>
<p>●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p>	<p>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p>

현행	개정
<p>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p>	<p>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p>	<p>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p>	<p>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환매·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p>	<p>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p>	<p>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p>

현행	개정						
<p>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p> <p>●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times \frac{B - C}{D} \times E</math> <p>A :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D :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E :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p>	<p>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head> <tr> <th>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20퍼센트</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현행	개정
<p>●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li> <li>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li> <li>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li> </ol>	<p>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li> <li>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li> <li>3. 제1항제3호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p>
<p>●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p> <p>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p> <p>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p>	
<p>●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li> </ol>	<p>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li> <li>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li> <li>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li> <li>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li> </ol>

현행	개정
<p>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p> <p>●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p> <p>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p>
<p>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p>	
<p>●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p>	<p>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p> <p>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p> <p>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p>
<p>●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p>

현행	개정
<p>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p> <p>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p> <p>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p> <p>● 제87조의27 【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p>	<p>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p> <p>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p> <p>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p> <p>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p> <p>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p>
<p>●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p> <p>3. (생략)</p>	<p>●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p> <p>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현행	개정
<p>4. (생략)</p> <p>5. ~ 8. (생략)</p> <p>●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② (생략)</p> <p>●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2. (생략)</p> <p>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p> <p>●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p> <p>●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5. ~ 8. (현행과 같음)</p> <p>●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p> <p>●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p> <p>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p> <p>●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행	개정																
<p>1. · 2. (생략) 3. ~ 5. (생략) 6. (생략) 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⑥ (생략)</p> <p>●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생략)</p> <p>●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생략) 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③ (생략)</p> <p>●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퍼센트</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td> </tr> </tbody> </table>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퍼센트</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td> </tr> </tbody> </table>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현행		개정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 13. (생략)		11. ~ 13. (생략)	
<신설>		<삭제>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 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 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그 자산 의 취득일로 본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⑥ (생략)</p> <p>⑦·⑧ (생략)</p> <p>●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06조【예정신고납부】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p> <p>③ (생략)</p> <p>●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생략)</p> <p>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p> <p>1.·2. (생략)</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111조【확정신고납부】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u>확정신고납부</u>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⑦·⑧ (현행과 같음)</p> <p>●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06조【예정신고납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생략)</p> <p>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예정신고 산출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 [(A + B - C) × D] - E</p> <p>A :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p> <p>B :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p> <p>C : 양도소득 기본공제</p> <p>D :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p> <p>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p> </div> <p>● 제111조【확정신고납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p>

현행	개정
<p>③ (생략)</p> <p>●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 ⑥ (생략)</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u>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u>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u>주식등의 양도차익</u>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p> <p>● 제115조【<u>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u>】(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u>환산취득가액</u>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u>주식등의 양도차익</u>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신설>	
<p>● 제115조의2【<u>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u>】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u></p>	<p>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u>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118조【준용규정】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p>	<p>● 제118조【준용규정】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p>

현행	개정
<p>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 제118조의8【<b>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b>】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3장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p> <p>● 제118조의9 ~ 제118조의18 (생략)</p> <p>● 제119조【<b>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b>】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p> <p>가. 나. (생략)</p> <p>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118조의8【<b>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b>】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119조【<b>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b>】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p> <p>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p> <p>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p> <p>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3. ~ 9. (생략)</p> <p>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u>발생하는 소득</u> <u>&lt;후단 신설&gt;</u></p> <p>가. ~ 다. (생략)</p> <p>11. (생략)</p> <p>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 카.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119조의2 【<u>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u>】 ① (생략)</p> <p>② 제1항제3호에 대하여 국외투자기구를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u>제한세율</u>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u></p> <p>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 <u>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익</u></p> <p>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u>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u></p> <p>3. ~ 9. (현행과 같음)</p> <p>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u>발생하는 소득.</u> <u>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영업상·과학상 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 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u></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11. (현행과 같음)</p> <p>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 카. (현행과 같음)</p> <p>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u>[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 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 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u></p> <p>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119조의2 【<u>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u>】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에 대하여 국외투자기구를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u>제한세 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 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
<p>●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⑥ (생략)</p>	<p>●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4장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p>	
<p>●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p> <p>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p>	<p>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금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p>	<p>식등의 경우 :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퍼센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p>●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p>	<p>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li> <li>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li> </ol> <p>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p>	<p>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p>	<p>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p>						

현행	개정
<p>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p>
<p>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일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p>	<p>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출국일 전일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출국일 전일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p>	<p>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p>	<p>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p>	<p>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p>	<p>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p>

현행	개정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급금에 국제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p>
<p>● 제126조의12【<u>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u>】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p>	<p>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27조【<u>원천징수의무</u>】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나. (생략)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8. (생략) <u>&lt;신설&gt;</u> ② ~ ⑥ (생략) <u>&lt;신설&gt;</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생략)  ● 제128조【<u>원천징수세액의 납부</u>】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p>	<p>● 제127조【<u>원천징수의무</u>】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제128조【<u>원천징수세액의 납부</u>】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p>

현행	개정
<p>하고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3. (생략)</p> <p>●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생략)</p> <p>●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p> <p>가. 삭제</p> <p>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u>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u></p> <p>다·라. (생략)</p> <p>2. ~ 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④ (생략)</p>	<p>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3. (현행과 같음)</p> <p>●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현행과 같음)</p> <p>●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p> <p>가. 삭제</p> <p>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u>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p> <p>다·라. (현행과 같음)</p> <p>2. ~ 8. (현행과 같음)</p> <p>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 <p>● 제148조의2【<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u>】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p> <p>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p> <p>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p>	

현행	개정
<p>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p> <p>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p>	<p>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p>	<p>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p> <p>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li> <li>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li> </ol>

현행	개정
<p>●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p> <p>●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p> <p>② ~ ⑪ (생략)</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⑬ ~ ⑮ (생략)</p>	<p>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p> <p>●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p> <p>●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p> <p>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p> <p>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p> <p>② ~ ⑪ (현행과 같음)</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⑬ ~ ⑮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제156조의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p> <p>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p> <p>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p>	<p>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p>
<p>●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p>	<p>●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 ⑩ (생략)</p> <p>●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p>	<p>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금융투자소득</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⑥ (생략)</p> <p>● 제165조의2 · ● 제165조의4 (생략)</p> <p>●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li> <li>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li> <li>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기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li> </ol>	<p>●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생략)</p>	<삭제>
<p>●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생략)</p>	<삭제>
<p>&lt;부칙&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 2023년 1월 1일</li> <li>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li> <li>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 2021년 6월 1일</li> <li>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li> </ol> <p>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월결산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산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주택임차차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6537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5379;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사항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과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2·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 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3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 상속세 ·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안 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안 제48조제11항제2호)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안 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 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2. ~ 4. (생략)</p> <p>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p>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u>유증과 사인증여</u>는 제외한다.</p> <p>7. ~ 10. (생략)</p> <p>●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p> <p>7. ~ 13. (생략)</p>	<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p> <p>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p> <p>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u>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u>은 제외한다.</p> <p>7. ~ 10. (현행과 같음)</p> <p>●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p> <p>7. ~ 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③ (생략)</p> <p>● 제9조【<u>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u>】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lt;신설&gt;</u></p> <p style="padding-left: 40px;"><u>&lt;신설&gt;</u></p> <p>● 제16조【<u>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u>】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비율 :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p> <p>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p> <p>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p> <p>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그 내</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조【<u>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u>】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p> <p>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6조【<u>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u>】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p> <p>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p> <p>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p> <p>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p> <p>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그 내</p>

현행	개정
<p>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u>아니한</u> <u>성실공익법인등</u>(공익법인들이 설립된 날부터 .....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u>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u>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u> .....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p> <p>3.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u>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u>,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 ,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u>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u>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u>6개월</u>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u>배당등을 받은 금액</u>(이하 이 조에서 "<u>초과배당금액</u>"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p>	<p>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u>같은 항 제2호</u>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u>아니한</u> <u>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u>(공익법인들이 설립된 날부터 .....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u>해당 요건을 충족하는</u>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u>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u> .....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u> ..... ,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u>공익법인등의 범위</u>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u>9개월</u>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u>배당등을 받은 금액</u>(이하 이 조에서 "<u>초과배당금액</u>"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p>

현행	개정
<p>서 공제한다.</p> <p>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생략)</p> <p>② (생략)</p> <p>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 5. (생략)</p> <p>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성실공익법인등</u>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p> <p>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p> <p>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p> <p>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공익법인등</u>(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p> <p>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p>

현행	개정
<p>8.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 ⑧ (생략)</p> <p>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u>성실공익법인등</u>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생략)</p> <p>⑪ <u>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u></p> <p>1. <u>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p> <p>2. 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u>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현행과 같음)</p> <p>⑪ <u>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u></p> <p>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p> <p>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p> <p>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⑫ <u>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u></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성실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2. (생략) ② (생략)</p> <p>●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u>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② ~ ⑤ (생략)</p>	<p><u>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u></p> <p>⑬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u></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p> <p>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p> <p>3.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p> <p>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생략)</p>	<p>●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현행과 같음)</p> <p>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p> <p>②·③ (생략)</p> <p>④ (생략)</p> <p>1.·2. (생략)</p> <p>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5. (생략)</p> <p>⑤ (생략)</p>	<p>●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현행	개정
<p>2. (생략)</p> <p>● 제76조【결정·경정】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p> <p>● 제78조【가산세 등】①·② 삭제                  ③ ~ ⑬ (생략)                  &lt;신설&gt;</p> <p>●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② (생략)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위탁하는 예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 제76조【결정·경정】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8조【가산세 등】①·② 삭제                  ③ ~ ⑬ (생략)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p> <p>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社債)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p>



현행	개정
<p>④ (생략)</p> <p>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⑥ (생략)</p>	<p>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p> <p>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위탁하는 위탁자</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⑥ (현행과 같음)</p>
<p><b>&lt;부칙&gt;</b></p> <p>제1조 <b>【시행일】</b>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b>【일반적 적용례】</b>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b>【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b> 제16조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제9항·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b>【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b>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b>【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제9항·제11항·제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 <b>【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7760호, 2020. 12. 2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
<p>● 제7조 【납세의무자】 ① (생략)  <u>&lt;신설&gt;</u></p>	<p>● 제7조 【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
<신설>	
<p>● 제7조의2 <b>【신택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b> 신택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택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택주택으로써</p>	<p>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택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택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li> <li>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li> </ol>
<p>● 제9조 <b>【세율 및 세액】</b>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p> <p>1. 2. (생략) ③ ~ ⑦ (생략)</p> <p>● 제10조 <b>【세부담의 상한】</b>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2. (생략)</p>	<p>● 제9조 <b>【세율 및 세액】</b>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0조 <b>【세부담의 상한】</b>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택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2. (생략)</p>
<신설>	
<p>● 제10조의2 <b>【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의 특례】</b>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12조【납세의무자】① (생략)  <u>&lt;신설&gt;</u></p>	<p>● 제12조【납세의무자】① (생략)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p>
<p>&lt;신설&gt;</p>	
<p>●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서</p>	<p>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p>
<p>●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p>	<p>●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p>
<p>● 제16조【부과·징수 등】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p>	<p>● 제16조【부과·징수 등】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신설>	
<p>● 제16조의2【<b>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b>】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li> <li>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li> <li>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을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p>	<p>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p>	